



# 감사위원회외의 외부감사인 감독 중점 고려 사항

:PCAOB와 감사위원장과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2024.8.8

# PCAOB가 주목한 감사위원장들이 고려해야 할 외부감사인 감독 고려 사항은?

PCAOB는 230여명의 감사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발견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감독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소개함

## 외부감사인 감독 시 고려 사항

- I 최신 경제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여 외부감사인과 상의
- II 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사항 등 유의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감사절차에 반영
- III 외부감사인이 품질관리 및 독립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관련 절차 확립

# I. 경제 환경 분석 및 리스크 관리

“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의 주요 리스크를 파악해 외부감사인과 상의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감사위원회는 하기와 같은 경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주요 리스크 및 업황을 파악할 것을 권장

2024년 GDP 성장률은 2.5%로 전년대비 회복세 전망  
그러나 부문별 차별화 및 대외 불확실성 상존

내수 부문에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이 성장세를 제약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

## 대외적 리스크 요인

주요국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경기 차별화 양상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시점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

## 참고 2024 주요 산업의 현황과 전망 BSI

	현황	전망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조선	138	141
전자	120	129
자동차	112	112
기계	108	111
식음료	108	106
정보통신	106	111
제약·바이오	103	116
금융	101	105
유통	94	106
석유화학	83	86
섬유·의류	79	91
철강	87	85
건설	52	63

### 2024년 상반기

: 조선, 전자, 자동차를 중심으로 다수의 산업에서 긍정적 의견

➢ 글로벌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중심의 수출이 확대된 영향

### 2024년 하반기

: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예상되나 건설, 철강 등 일부 산업은 여전히 부진 전망

## II. 핵심감사사항 등 유의적 사항 논의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핵심감사사항을 비롯한 유의적인 사항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논의해야 함 ”

특히 국내 감사위원회는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 핵심감사제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하여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술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이 특별히 주의할 사항들

회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 핵심감사제 단계별 절차

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사항 선정 논의

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사항 선정 대면 회의

선정된 핵심감사사항의 이슈 보고 받기

핵심감사제 관련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차질 대응

감사보고서 발행시점 감독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핵심감사제 내용 확인)

## 참고 FY2023 KOSPI200 핵심감사사항 현황

2023 사업연도의 KOSPI 200기업 핵심감사사항 평균 개수는 **1.7개**로 조사되었으며  
유형별 비중 Top10은 하기 표와 같음

분류	개수	비율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77	22.85%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	64	18.99%
(수주산업 외) 수익인식	53	15.73%
총당금(총당부채) 평가	20	5.93%
(수주산업)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18	5.34%
(수주산업)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15	4.45%
재고자산의 손상평가	13	3.86%
금융자산/부채 가치평가	12	3.56%
(수주산업)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절성	11	3.26%
사업결합 회계처리	11	3.26%

### 핵심감사사항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선정 시 선정사유와 근거, 감사방법에 대한 논의

핵심감사사항 감사절차의 검토

### Ⅲ. 감사품질관리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품질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에게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 보수 및 시간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외부감사인의 활동을 감독하며 사후적으로는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외부감사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문서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사시간·인력·보수·감사계획의 적정성 등 포함</li></ul></li><li>• 외부감사인 선임은 대면회의를 통해 진행</li></ul>
외부감사인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부감사인의 업무단계별 업무수행 사항 및 독립성 침해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감독</li><li>•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진의 적격성이나 성실성에 관한 특이사항을 논의</li></ul>
외부감사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내용의 일치 여부를 파악</li><li>•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신규 외부감사인을 위한 외부감사환경 개선 뿐 아니라, 전기 외부감사인의 계약 연장에도 활용</li></ul>

### Ⅲ. 감사품질관리 - 독립성

“

외부감사인 독립성 감독의 일환으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공 전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검토 필요

”

- ➔ 국내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상 금지되는 비감사업무를 철저히 확인.  
다만, 글로벌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업무는  
국제윤리기준도 준수해야함에 유의

#### 공인회계사법에서 외부감사인에게 금지하는 비감사업무(\*)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대행	경영의사 결정 지원	재무정보 체제 구축 및 운영	보험계리 업무
				
인사(HR) 지원	소송 지원	실사 가치 평가 지원	자금조달 투자 알선 및 중개	기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
				

※ 금지되는 비감사업무는 감사대상회사 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까지도 동일하게 적용

(\*)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직무제한) 2항